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에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차대번호
· 부품·사양 정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고기록정보·운행정보
의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8.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에 대한 조사·연구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0조제6항중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66”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50(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33(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부목 중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을 “보험회사”로 하고, 같은 호 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4항제22호의2”를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제2호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차대번호·부품·사양 정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고기록 정보·운행정보의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u>
<u><신설></u>	8. <u>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에 대한 조사·연구</u>
7. 다른 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9. ----- ----- -----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신용카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1911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인 신용카드업자	제2조(신용카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 ----- -----

[별표 9]
2. 개별기준

부. 보험회사가 법 제110조의3제2 항을 위반한 경 우 <u>그 보험회사</u> 의 발기인등	법 제209 조 <u>제4항</u> <u>제22호의</u> <u>2</u>	1,000
--	--	-------

[별표 9]

2. -----

부.----- ----- - <u>그 보험회사</u>	----- ----- <u>제4항</u>	1,000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1